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명단 공개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4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명단 공개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 2 |

##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8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 Ⅲ. 검토의견

#### 1. 명단 공개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안 제44조)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sup>1)</sup>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제외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4조).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44조(벌칙) ----- |

-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p>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u>경우</u>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 <p>-----<br/>-----<br/>-----.</p> <p>---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
| <b>부 칙</b>                                                                                                                     |                                                                                                                                                    |
|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p>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퇴직급여·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음.<sup>2)3)</sup>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은 2011년임. 당시 「근로자퇴직

한편 2024년 기준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등<sup>4)</sup>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국회는 2024년 「근로기준법」 개정<sup>5)</sup>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였음.<sup>6)</sup>

구체적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사업주(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음.

### 「명단공개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12502)에서 퇴직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조항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임금 등의 미지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반의사불벌조항(2005년 개정시 신설됨)을 고려한 사항으로 보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4) [2019~2024년 임금체불규모]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임금체불액 | 1,721,703 | 1,583,014 | 1,350,452 | 1,347,209 | 1,784,530 | 2,044,848 |

5)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30 대안의 제안이유 참고

|                                                                                                                                                                                                                                                                                                                                                                                                                                                                                                                                                                                                                                                                                                                                                                                                                                                                                       |
|---------------------------------------------------------------------------------------------------------------------------------------------------------------------------------------------------------------------------------------------------------------------------------------------------------------------------------------------------------------------------------------------------------------------------------------------------------------------------------------------------------------------------------------------------------------------------------------------------------------------------------------------------------------------------------------------------------------------------------------------------------------------------------------------------------------------------------------------------------------------------------------|
| <p>「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p> <p>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채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채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채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채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타

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2025.10.23.)과 일치시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있어 시행일의 차이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용 혼란도 적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을 통하여 명단공개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채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까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은 경미한 범죄로 볼 수 없는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제외 취지에 부합하고, 2024년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의 임금채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바 동일한 범죄 행위인 퇴직급여 체불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40 |